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□검토의견
가.개 요
○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-개정된 전염병예방법(2000. 8. 1)에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바뀜에 따라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 및 병명관련 조문을 정비하고
-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를 신설(제2조제8호, 제9호)하여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토록 현행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
나.검토사항
○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병명변경 관련조문 정비와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
○안 제2조제8호, 제9호 - 위탁사업추가
위탁사업에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사업은
-현재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,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.
○안 제3조제2항 - 위탁사업 경비지급
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경비를 전액 지급 가능토록 하였음.
-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탁단체에 대한 과다지원의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기 위탁사업 경비지원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....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□검토의견
가.개 요
○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(2000.10.1)에 따라 시·도 단위로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는「생활보장위원회」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
-당연직위원에 여성정책관을 추가하며
-민간인도 행정1부시장과 함께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또한, 여성정책관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며
-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수 3분의 1이상 요구로 회의개최 소집요구 가능토록 변경하려는 것임.
나.검토사항
○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,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.
○이외에 공동위원장제 도입, 위원수 3분의 1이상 회의개최 소집 요구권의 추가 등은 조례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됨.

....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
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□검토의견
가.개 요